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00
----------	-----

2019. 6. 24.(월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최경천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9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6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6월 13일

-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최경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,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행정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등 명칭 정비 (안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)

- “법무통계담당관” → “법무혁신담당관”
- “법무통계담당관실” → “법무혁신담당관실”
- 약칭 사용 및 띄어쓰기 정비 (안 제2조, 제4조, 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)
- 용어 정비 (안 제7조, 제8조, 제11조)
  - “타업무” → “다른 업무” / “문의” → “상담”
  - “즉석 답변” → “현장 답변” / “실과” → “부서”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최영지 수석전문위원)

#### 가. 제출배경

-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개정하고,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행정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.

#### 나.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

- 안 제2, 4, 6, 7조에서는, 조직개편에 따른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 제7조(개정 2018. 10. 1.)의 개정에 따라 기존 법무통계담당관 및 법무통계담당관실을 법무혁신담당관 및 법무혁신담당관실)로 변경함.

※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 (개정 2018. 10. 1.)

제7조(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) ① 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, 예산담당관, 세정담당관, 청년정책담당관, **법무혁신담당관**을 둔다.

- 안 제2조에서는, “충청북도”에 대한 약어표기를 포함하여 이후 조항에 사용되는 “도” 명칭이 ‘충청북도 “를 의미함을 명확히 함.
- 안 제3, 6, 8조에서는, 기존 “시군” 또는 “시, 군” 그리고, “읍,

면, 동” 으로 표기된 것을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문장부호 사용 원칙에 따라 열거된 단위들이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가운데 점을 넣어 “시·군”, “읍·면·동” 으로 개정함.

-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, 조문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, “문의” 를 “상담” 으로 개정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함.
-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 제7조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부서 명칭,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바 법적,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<참고자료>

#### □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구성 및 운영 현황

- 상담요원: 8명 (‘19. 2. 1. 기준)
  - 관세사(1), 변리사(1), 세무사(1), 지방행정전문가(1), 법무사(1), 변호사(3)

#### ● 운영 현황

##### ①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현황

- 상담내용 :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행정사건 등의 무료상담
- 개설장소 : 도 홈페이지 → 정보공개 → 법/제도정보 →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
- 운영실적

구 분	총 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건 수	281	99	75	85	22

② 찾아가는 이동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현황

- 상담지역 : 시·군별 민원실, 축제행사장
- 운영실적

구 분	총 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횟수/건수	35회/415건	11회/195건	11회/105건	11회/103건	2회/12건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경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5월 31일  
발 의 자 : 최경천, 박상돈, 박형용,  
심기보, 육미선, 이상욱,  
송미애

## 1. 제안이유

-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,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행정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등 명칭 정비 (안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)

- “법무통계담당관” → “법무혁신담당관”
- “법무통계담당관실” → “법무혁신담당관실”

나. 약칭 사용 및 띄어쓰기 정비 (안 제2조, 제4조, 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)

다. 용어 정비 (안 제7조, 제8조, 제11조)

- “타업무” → “다른 업무” / “문의” → “상담”
- “즉석 답변” → “현장 답변” / “실과” → “부서”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등 : 붙임

나.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
다. 협의 :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

라.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**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도 법무통계담당관실” 을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 법무 혁신담당관실” 로 한다.

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시군” 을 각각 “시·군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상담실운영은 도지사” 를 “상담실 운영은 충청북도지사” 로, “법무통계담당관 책임하에” 를 “법무혁신담당관 책임 하에” 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무통계담당관 또는 법무통계담당관실” 을 “법무혁신담당관 또는 법무혁신담당관실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, 군 또는 읍, 면, 동에 일정기간 파견,” 을 “시·군 또는 읍·면·동에 일정기간 파견하여” 로 한다.

제7조 중 “법무통계담당관” 을 “법무혁신담당관” 으로, “해당실과 담당 사무관” 을 “해당 부서 업무담당사무관” 으로, “상담시” 를 “상담 시” 로, “임석요청시 타업무” 를 “임석 요청 시 다른 업무” 로 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면담은 가능한한 즉석 답변” 을 “상담 시 면담은 현장 답변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즉석” 을 “현장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문의는” 을 “상담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전화

문의는” 을 “전화상담은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관련시군” 을 “관련 시·군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도고문변호사” 를 “도 고문변호사” 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관계실과간” 을 “관계 부서 간” 으로 한다.

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상담실운영” 을 “상담실 운영” 으로, “기록유지” 를 “기록 유지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설치)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(이하 “상담실“이라 한다)은 <u>도 법무통계담당관실</u> 에 둔다.	제2조(설치) ----- ----- <u>충청북도 (이하 “도“라 한다) 법무혁신담당관실</u> -----.
제3조(상담범위) 상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도 및 <u>시군</u> 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 사항 2. 도 및 <u>시군</u> 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3. ~ 6. (생략)	제3조(상담범위) ----- -----. 1. --- <u>시·군</u> ----- ----- 2. --- <u>시·군</u> ----- ----- 3. ~ 6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운영) ① <u>상담실운영은 도지사</u> 의 명을 받아 <u>법무통계담당관 책임하에</u> 운영한다. ② (생략)	제4조(운영) ① <u>상담실 운영은 충청북도지사</u> ---- <u>법무혁신담당관 책임 하에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상담관) ① <u>상담관은 법무통계담당관 또는 법무통계담당관실 업무담당사무관이</u> 되며,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한다. ② (생략)	제6조(상담관) ① ----- <u>법무혁신담당관 또는 법무혁신담당관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② (현행과 같음)

<p>③ 상담관은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시, 군 또는 읍, 면, 동에 일정기간 파견,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③ ----- ----- 시·군 또는 읍·면·동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임석) 법무통계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실과 담당사무관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,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임석) 법무혁신담당관----- ---- 해당 부서 업무담당사무관 - ---- 상담 시 ----- 임 석 요청 시 다른 업무----- -----.</p>
<p>제8조(상담처리) ① 면담은 가능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.</p> <p>② 서면 또는 인터넷 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.</p> <p>④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 사항은 도정시책에 반영하거나, <u>관련시군</u>에 통지한다.</p>	<p>제8조(상담처리) ① 상담 시 면담은 현장 -----.</p> <p>-- 현장 -----</p> <p>-----</p> <p>-.</p> <p>② ----- 상담은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.</p> <p>③ 전화상담은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-- 관련 시·군-----.</p>
<p>제10조(자문)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</p>	<p>제10조(자문) ① -----</p>

<p>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<u>도고문변호사</u>의 자문을 받는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-----  <u>도 고문변호사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운영위원회) 상담실과 <u>도 관</u> <u>계실과간</u>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높이며,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운영위원회) ----- <u>관</u> <u>계 부서 간</u>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
<p>제12조(기록유지) 상담관은 <u>상담실 운영</u>에 대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비치하고 <u>기록유지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기록유지) ----- <u>상담실 운영</u>-----  --- <u>기록 유지</u>-----.</p>

## 관계법령 등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생략

#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### 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

제7조(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) ① 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, 예산담당관, 세정담당관, 청년정책담당관, 법무혁신담당관을 둔다.<개정 2018.10.1.>

② 기획관리실장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,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, 예산담당관·세정담당관·청년정책담당관 및 법무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18.10.1.>